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09
----------	------

제출연월일: 2024. 7. 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지급대상): 수정

- 5급이상의 경우 특별한 징수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실무자로 지급대상을 변경

나. 안 제5조(지급 심사 등): 수정

- 세입징수포상금 공적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안 제10조(시행규칙) 등: 폐지 및 자구 수정

- 불필요한 조문 제10조 삭제 및 자구 간결하게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7844호, 2024. 5. 1.)
- 라. 입법예고: 2024. 4. 29. ~ 5. 20.(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4급”을 “5급”으로,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급하여야”를 각각 “지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산하여야”를 “가산해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4급</u>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u>아니 한다</u>.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u>그러 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u>아니하고</u>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u>아니한</u> 경우에 한한다.</p> <p>5. (생략)</p> <p>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p>	<p>제2조(지급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급</u> ----- <u>않는다</u>. ----- ----- <u>그렇지 않다</u>.</p> <p>제3조(지급기준)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않고</u> ----- ----- ----- ----- ----- <u>않은</u> ----- -----.</p> <p>5. (현행과 같음)</p> <p>6. ----- ----- ----- -----</p>

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4조(지급한도) ① (생략)

제5조(지급 심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6조(대장 기록 등)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지급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심의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장 기록 등) -----

----- 정리
해야 -----.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무2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
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
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
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
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
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
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
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③ -----
----- 신청해야 -----.

제8조(포상금 지급) ① -----

-----지급해야 -----.

② -----

----- 지급해야
-----.

제9조(환수) ① -----

-----환수해야 -----.

-----않는다.

② -----

----- 환수해야 -----.

③ -----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가산해야 -----.

<삭 제>

근 거 법 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세무2과
- 직 급: 지방세무주사
- 성 명: 진선영
- 연락처: (052)290-3421